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한준호의원(찬성자 16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6. 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6. 18.)

상정·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준호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²⁾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려는 내용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4. 대체토론(24.06.14.)의 요지

- 방송법 개정안 제46조제3항제1호의 “국회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을 “6명”으로 수정해야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을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반영하는 데 합리적이고, 같은 항 제2호의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부분은 최민회의원안과 같이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회원수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노종면위원)

-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방송3법의 경우 이훈기의원안의 부칙과 같이 과거의 이사선임 절차를 단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방송편성 규약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영방송에 대해 일반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함.(이훈기위원)
- 방송편성규약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이정현위원)
- 방송편성규약 등과 관련하여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한민수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원안가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4인 이상</u> <u>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u>출석위원</u>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